▣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8조 (대학,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 및 특수학부) ① 대학에 학장을 두고,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각각 원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한다. 다만,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대우교수로 보할 수 있다. ② 대학에 부학장을,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③ 대학에 **학과**를 설치하고, 각 **학과**에 **학과장**을 두며, **학과장**을 보좌하기 위하여 **부학과장**을 둘 수 있다. **학과장**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, **부학과장**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다만,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경우 조교수 또는 특별임용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. ④ 대학 및 **학과**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고, **학과**를 설치하지 않고 **대학에** 전공을 설치한 **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두며**,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⑤ 일반대학원에 학과를 설치하고, 학사과정 연계학과의 소속 학장 및 해당 학과장이 통할한다. 단, 연계학과가 없는 학과에 한하여 학과장을 두고, 학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⑥ 일반대학원에 학과간협동과정 및 학연산협동과정을 설치하고, 각 협동과정에 주임교수를 두며, 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⑦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학과, 과정, 전공을 설치하고 각 학과, 과정, 전공에 각각 학과장, 과정주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	**제8조 (대학,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 및 특수학부)**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대학에 **학과(부)**를 설치하고, 각 **학과(부)**에 **학과(부)장**을 두며, **학과(부)장**을 보좌하기 위하여 **부학과(부)장**을 둘 수 있다. **학과(부)장**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, **부학과(부)장**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다만, 계약학과와 재직자 특별전형학과의 경우 조교수 또는 특별임용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. ④ 대학 및 **학과(부)**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고, **학과(부)**를 설치하지 않고 대학에 전공을 설치한 **경우와 순수 외국인 학생 전용 전공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**,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
두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⑧ 특수학부에 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,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둔다.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, 전공주임교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한다. ⑨ 대학, 일반대학원,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두고, 교학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. 다만,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,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.	
	부 칙(학법대우 기획팀-139호 : 2024. 6.10.)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